

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사업연도		연결자법인명		사업자등록번호	
		연결모법인명		사업자등록번호	
연결전 연결연도 소득 계산	①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				
	소득조정 금액	② 익 금 산 입			
		③ 손 금 산 입			
	④ 차 가 감	소득금액 (①+②-③)			
	⑤ 기부금	손금산입 한도초과액			
	⑥ 기부금	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 액 손 금 산 입			
	⑦ 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(④+⑤-⑥)				
연결법인별 조정 항목	⑧ 수입배당금액 상당액 익금불산입				
	⑨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				
	⑩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				
	⑪ 기 부 금 손 금 산 입 한 도 초 과 이월액 손금불산입				
연결 제거	⑫ 차 가 감 계 (⑦+ ⑧- ⑨- ⑩+ ⑪)				
	⑬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상당액 익금불산입				
	⑭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상당액 손금불산입				
	⑮-1 직전 사업연도 연결법인 채권에 대해 손금불산입한 대손충당금 상당액 손금산입				
연결집단내 거래 손익의 조정	⑮-2 연결법인간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상당액 손금불산입				
	⑯ 연결법인간 자산 양 도 소 득	⑮익 금 불 산 입			
		⑮익 금 산 입			
	⑰ 연결법인간 자산 양 도 손 실	⑯손 금 불 산 입			
		⑯손 금 산 입			
연결법인별 배분 액	⑳ 차 가 감 계 [⑫-⑬+⑭-(⑮-1)+(⑮-2)-⑯+⑰+⑱-⑲]				
	㉑연결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				
	㉒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				
	㉓기 부 금 조 정 전 연 결 소 득 금 액 (㉑-㉒+㉓)				
	㉔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불산입				
	㉕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한 도 초 과 이 월 액 손 금 산 입				
	㉖연결수정소득금액 (㉓+㉔-㉕)				
연출 세액 의 개별 귀속 및	㉗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 처분손실손금불산입				
	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(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)(㉑+㉒)				
	㉙ 연 결 소 득 개 별 귀 속 액 (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)				
	㉚ 연 결 이 월 결 손 금 공 제				
㉛ 비 과 세 소 득					
㉜ 소 득 공 제 액					
납부 할 세 액 계 산	㉝ 과 세 표 준 개 별 귀 속 액 (㉙-㉚-㉛-㉜)				
	㉞ 연 결 세 율				
	㉟ 연 결 법 인 별 산 출 세 액				
	기 납 부 세 액	㊱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			
		㊲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			
		㊳ 가 산 세 액			
		㊴ 가 감 계 (㉟-㊱-㊲+㊳+㊴)			
		㊵ 중 간 예 납 세 액			
	기 납 부 세 액	㊶ 원 천 납 부 세 액			
		㊷ () 세 액			
㊸ 소 계 (㊵+㊶+㊷)					
기 납 부 세 액	㊹ 신 고 납 부 전 가 산 세 액				
	㊺ 합 계 (㊸+㊹)				
㊻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					
㊼ 차 감 납 부 할 세 액 (㊺-㊻)					
토지 등 양 도 소 득 에 대 한 법 인 세 계 산	양 차 도 익	㊽ 등 기 자 산			
		㊾ 미 등 기 자 산			
	㊿ 비 과 세 소 득				
	㋐ 과 세 표 준 (㊽+㊾-㊿)				
	㋑ 세 율				
	㋒ 산 출 세 액				
	㋓ 감 면 세 액				
	㋔ 공 제 세 액				
	㋕ 가 산 세 액				
	㋖ 가 감 계 (㋒-㋓-㋔+㋕)				
㋗ 기 납 부 세 액					
㋘ 차 감 납 부 할 세 액 (㋖-㋗)					
미 환 류 소 득 법 인 세	㋙ 과세대상 미환류소득				
	㋚ 세 율				
	㋛ 산 출 세 액				
	㋜ 가 산 세 액				
	㋝ 이 자 상 당 액				
㋞ 납부할세액(㋛+㋜+㋝)					
㋟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 (㋘+㋞)					
㋠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공제					
㋡ 납 부 (환 금) 할 세 액 (㋟-㋠)					

작성 방법

* 이 서식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에서 연결법인별로 작성하는 서식입니다.

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76호의6서식) 및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(별지 제76호의7서식)의 각 항목 중 해당 연결법인란에 기재한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.

<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>

1. ㉞ 과세대상 미환류소득란: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14호서식)의 ㉞금액(음수인 경우 '0')을 적습니다. 다만, 2017.1.1.부터 2017.12.31.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㉞금액에 종전의 「법인세법」(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(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2호의2서식)의 ㉞금액(음수인 경우 '0')을 합산하여 적습니다.
2. ㉟ 가산세액란: 가산세액계산서(별지 제9호서식)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의 ㉟가산세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.
3. ㊱ 이자상당액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0조의3제2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종전의 「법인세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93조제20항에 따른 금액[종전의 「법인세법」(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56조제8항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]을 합산하여 적습니다.